

# 독서교육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2009. 3. 1

□ 개정 : 2015. 4. 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의 독서교육인증제 실시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독서교육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독서교육위원회(이하 '위원회')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독서교육위원회는 기획위원회(각 단과대학장)와 집행위원회(교양대학장, 교양대학 학과장, '글쓰기와 자기표현' 담당교수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교양대학 교학과 직원등)로 구성한다.

②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.

**제3조 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 결정한다.

- ① 독서인증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
- ② 독서백일장에 관련된 사항
-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4조(회의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5조(운영세칙)**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